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 Plan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cern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Examination Qualified for Security Guard-

이 상 철* · 안 성 조**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Ⅲ.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시큐리티자격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　　론

<요 약>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주제어 : 시큐리티산업, 자격제도,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경비지도사, 시큐리티요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한국시큐리티자격검정평가원 원장, 이학박사(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시큐리티자격검정평가원 사무총장, 법학박사(교신저자)

I. 서 론

시큐리티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안전(security)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시큐리티종사자에 대한 전문성·공신력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자본력이나 지명도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 시큐리티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통의 인재중에서 자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여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ecurity Time, 2007.4).

경비원을 포함한 시큐리티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는 자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전문적인 자격증은 결국 고객을 보호하고 시큐리티산업을 활성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시비, 낮은 처우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종태, 2002 : 308).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확보와 관련된 제도가 '자격증'제도라 할 수 있다(박동균, 2002 : 135).

한국에서의 시큐리티요원인 경비원은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동법 시행령 제18·19조)만 받으면 된다. 경비원을 교육·감독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신력있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는데, 이중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비공인 민간자격이 있다.[1] 자격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

1)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자격을 말하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격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민간자격이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에 대해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을 해 주는 자격으로서 '준국가자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순수 민간자격보다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자격 및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보완하여 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2007.4.27 법률 제8390호). 개정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의 수준체계인 자격체제를 도입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산업현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5조 및 제6조),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격에 대하여 자격상호간의 연계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7조). 여기서 경호·경비·보안관련 시큐리티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과정 등의 제반 제도적 장치를 시큐리티자격제도라고 한다. 시큐리티관련 국가자격은 경비업법(제10-12조)에 의한 경비지도사제도가 있으며, 신변보호 및 민간조사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이 일부 발급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시큐리티(경호·경비·보안)관련 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직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신력있는 자격제도의 운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존중되고 치안수요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호·경비·보안 분야의 자격증제도의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늘어나는 시큐리티산업의 수요에 따른 시큐리티자격제도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요구로 실제 시행된 민간시큐리티자격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의 시큐리티 관련 자격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1.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제도

한국에서 국가자격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검증을 국

가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검정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주는 자격을 의미한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이라 한다. 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가가 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민간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인자격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 1월 현재 한국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1개부처 소관 4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0개 종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시큐리티관련 국가공인자격은 경찰청 소관으로 한국열쇠협회가 관리하는 열쇠관리사1·2급(2008.1.3～2009.1.2)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2007.4.6～2012.4.5) 자격이 있다.

한국의 시큐리티형태와 시스템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경비지도사제도 또한 그러하다. 그 직무성격상 일반경비지도사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관리자가 서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경비지도사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해서 도입된 것이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제도는 경비업자에게 필요한 조언 등의 의무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비업자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가는 항목이다. 또 한국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라는 차이도 있다. 국가가 경비지도사를 관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체 경비원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지만(박준석·박대우, 2004 : 198), 실제는 형식적인 경우가 다분하다. 또 경비지도사자격은 시큐리티관련 영역에 속하지만 신변보호, 기계경비,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학력수준이나 능력 혹은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자격제도이다.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국가공인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도 자격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미국의 시큐리티자격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산업시큐리티협회(ASIS : American Society Industrial Security)가 시행하는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처럼 경비업무에 어느 정도 종사한 경력이 있

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CPP는 훨씬 광범위한 시큐리티전문가를 선발하여 경비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권위있는 자격이다.[2)]

2. 시큐리티관련 민간자격의 실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큐리티관련 민간자격은 주로 민간경비분야와 민간조사분야에서 경호원 및 경호사, 민간조사원 등의 종목이 있다.[3)]

1) 민간 시큐리티요원의 자격

(1) 국제경호협회

국제경호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으로 경호원은 3등급(1급, 2급, 3급)과 경호사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의 취득, 평가시험, 자격관리, 검정방법 등은 「경호자격운영규정」(1994.4.12제정)과 「경호자격 운영보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4)] 시험응시료(실기·필기 각5~20만원)와 자격발급비(20~30만원), 협회가입비(5만원), 연회비(6만원) 등을 징구하고 있다(국제경호협회, 2005 : 436).

시험에 합격하여 경호원 및 경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걸쳐 협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경호협회 부설 경호아카데미에서는 경호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 교육훈련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5)] 연수기간은 3개월(240시간)이며, 1일 평균 4시간(월-금요일) 교육하여 경호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비(270만원), 협회가입비(5만원), 협회연회비(6만원), 자격응시료(10만원), 자격발급료(20만원), 교재(이론,실기) 및 피복비(39만원) 등 총 350만원이 소요된다. 국제경호협회의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은 2005년 현재 10,432명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황권, 2006 : 177).

---

2) ASIS에서 1977년부터 시행하는 시큐리티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큐리티자격제도로 2007년 현재 11,000(현직에서 활동하는 수는 약5,0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일년에 약900명 정도가 응시하여 66%~72%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최선태, 2000 : 42). 미국 기업의 최고시큐리티책임자(CSO)가운데 시큐리티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49%인데 이중 70%이상이 CPP자격보유자일 정도로 CSO의 필수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다(시큐리티월드, 2008.1).

3) 산업시큐리티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보안연구원에서에서 주최하고 (주)한국산업보안그룹이 주관하는 산업보안관리사 2급 자격시험을 1~2회 시행하고 2008년에는 3~5회를 공고하고 있다(http : //www.antispy.or.kr).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제경호협회(2005 : 425-445) 참조.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www.ibga.co.kr 참조.

⑵ 한국경호경비협회

한국경호경비협회라는 단체 부설 한국경호검정평가원에서 시큐리티자격으로 경호관리사 1·2급, 신변보호사 1·2·3급, 무인경비관리사 1·2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6] 경호관리사는 연2회(5월－11월), 신변보호사(경호책임자, 경호원)는 연4회(응시수수료5만원, 가입비 및 연회비 별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민간조사분야의 민간자격

민간조사법안은 이상배의원과 최재천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이 주관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⑴ 한국특수행정학회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중 민간경비와 관련된 것은 사설정보관리사(PIA :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탐정)·민간조사 및 특수경호사(PSG : Private Security Guard) 자격이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탐정·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PIA사설정보관리사(탐정) 자격시험은 4회 실시되었으며, 5회 시험이 2008년 3월 시행 예정이다.[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 분야 사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리 감독 등 감시활동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법질서로부터 권익보호는 물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행복 추구를 위하여 사회질서 확립 및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질서감시원협의회 회원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 포상제도에 따라 법률이 허용 범위에서 전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 실무교육을 받은 사회질서감시원에 대한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⑵ 한국민간조사협회, 대한민간조사연합회・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민간조사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조사 자격종목으로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이 있다.[8] 그 동안 21기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였다. 그 외에도 대한민간조사연합회 및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에서 관련 연구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9]

---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www.ss112.com/guard.asp 참조.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www.rokpia.com, http : //www.kspia.kr 참조.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www.pikorea.com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cpi.or.kr 참조.

Ⅲ.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시행

1) 시큐리티자격제도 도입취지 및 방향

(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

현대사회는 전문화·자격증의 시대이며, 능력중심 사회에서 전문 자격증은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재고하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도구이다. 1997년「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자격증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으나 시큐리티분야는 자격제도가 취약하고 일부 개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경비원의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자격 제도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한국은 1999년 3월 31일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부 활성화되었으나 경비원은 공인된 민간자격증제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2006년도 현재 8회에 걸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으로 약 14,509명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3,226명(23%)만이 선임되어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86년부터 대부분의 경비업무가 국가자격증제도를 실시하여 경비원 40.6만명중 11.3만명(27%)이 국가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검정을 받아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경찰청의「민간경비교육 기본지침」에 따라 종전의 직장단위 위탁제 교육이 교육기관제 교육으로 전환되어 경비원의 실무 능력은 향상 되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경비원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가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2회 실시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그 동안 학계·업계에서 지적되어 왔던 시큐리티관련 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전국적 규모로 시행의 발걸음을 내딛였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⑵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추진 및 방향성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격제도를 연구하여 협회 실정에 맞도록 년차 사업으로 책정하여,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되 1차년도(2006년)는 우선 '신변보호사'업무를 대학(교)에 국한하여 검정 실시하고 2·3차년도(2007-8년)는 대학 및 경비협회 산하 지회로 확대, 5개 업종을 전부 검정함으로써 기반을 조성하여 4차년도(2009년)는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신청하여 경찰청의 공인인정을 받아 명실상부한 민간공인자격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자격등급과 시험응시 대상자에 대한 제한 유무, 검정 응시자의 자격과 응시자의 학력제한 여부, 검정과목 및 방법, 자격시험의 출제기준과 범위 및 방식 등에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있었다.[10] 이를 토대로 제2회 시험에서는 보다 많은 기획회의와 점검을 통해서 몇차례 수정 보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경비협회와 연구원은 상호간 전반적인 업무 협조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위 있는 검정을 위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대학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원 부설 '한국시큐리티자격검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지정하며 대학(교)와 경비협회(지회) 개념에 따라 '시큐리티아카데미'를 구상하여 대학(교)는 학사과정 중심으로 검정하고 경비협회(지회)는 현직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찰청의 교육과정에서 미흡한 학과와 부족한 실기를 보완함으로서 우수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2) 시험종목 및 응시자격

시험종목은 제1회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그 응시자격은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 <표 3-1>과 같은 자격 종류 및 등급별로 응시자격을 한정하였다.

<표 3-1 >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종목 및 응시자격 비교

시행년도	종류	등급	응 시 자 격
2006년	제1회 신변 보호사	2급	4년제 대학교 시큐리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3급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3급	전문대학 시큐리티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2007년	제2회 신변 보호사	2급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2006년도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3급 취득자 포함)
		3급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지운(2007a : 464-467)을 참조.

제1회 응시자격이 제2회 시험에서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학력에 따라 응시제한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급수의 차이를 학력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학력은 동등하게 하고 시큐리티 수행능력으로 평가하기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3) 시험과목 및 검정평가

시험과목은 이론과 실기과목으로 구분하여 제1회 시험에서 이론과목은 경호학·경찰학·민간경비론·범죄학·경비업법·법학개론 등에서 2과목을 택하였다. 이 중에서 이론과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2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이수학점(A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B 이상이 경우에는 80점, C 이상인 경우에는 70점, D 이상인 경우에는 60점으로 산정)에 따라 평가하였다. 실기과목은 경호무도 50점, 체포·호신술 5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응시자를 무도종목별로 구분하여 시험조를 편성하고 조별로 입실하여 3명의 평가위원이 직접 채점하였다.

제2회 시험에서 2급 응시자는 학과(필기)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이론과목으로 민간경비론(10문항)·경비업법(20문항)·경호학(20문항)으로 하여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총50문항을 출제하여 문제당 2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3급 응시자에게는 경호·경비 관련학과목, 경찰 관련학과목, 법학 관련학과목 중 신변보호사 자격과 연관되는 과목으로 한정하여 1개 과목을 이수한 자는 학과(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간경비론과 경비업법·경호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알기 쉽게 수록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함으로써 응시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다.

실기과목은 범인대응술은 정확도, 숙련도, 이해도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2급 응시자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정도를, 3급 응시자는 일반적 능력정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예상문제와 실기평가 예제는 동영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http : //kis21.kr)에 사전에 공지하여 사전에 연마하도록 배려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응시자 전원에 대한 시험도중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험 1주일 전까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였다.

2.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현황 및 분석

1) 응시현황

제1회·제2회 신변보호사 자격은 1급에서 3급까지 구분하여 2급 및 3급시험을 실시하였다. 응시지구별 응시대학수와 합격인원 및 합격률을 보면 다음의 <표Ⅲ-2>와 같다.

<표 3-2>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권역별 응시 및 합격 인원·합격률

(단위 : 명, %)

회수	구분	수도권	대구권	경북권	부산권	대전권	호남권	합계
제1회 시험	응시대학수	9(22.5)	13(32.5)	1(2.5)	3(7.5)	7(17.5)	7(17.5)	40
	응시인원	185(22.5)	246(29.9)	75(9.1)	23(2.7)	165(20.0)	128(15.5)	822
	합격자(합격률)	163(88.1)	228(92.6)	71(94.6)	23(100)	153(92.7)	125(97.6)	763
제2회 시험	응시대학수	8(24.2)	8(24.2)	5(15.2)	2(6.0)	5(45.2)	5(15.2)	33
	응시인원	368(30.2)	258(21.1)	130(10.7)	30(2.5)	333(27.3)	101(8.3)	1,220
	합격자(합격률)	330(30.3)	236(21.7)	121(11.1)	27(2.5)	283(26.0)	93(8.5)	1,090

제1회 시험의 응시지구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수험장소 : 용인대)의 응시자는 9개교 185명이었으며, 대구(수험장소 : 대구과학대)의 응시자는 13개교 246명이었다. 경북(수험장소 : 경운대)의 응시자는 1개교 75명이었고, 부산(수험장소 : 동의과학대)의 응시자는 3개교 23명이었다. 대전(수험장소 : 혜천대)의 응시자는 7개교 165명이었으며, 광주(수험장소 : 동강대)의 응시자는 7개교 128명이었다.

수도권에 속한 대학은 대부분 비슷한 지원율을 보였다. 부산은 타지역에 비하면 가장 적은 지원자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대전지역은 중부대와 혜천대의 지원자만으로도 120명이 되었다. 대구지역은 가장 많은 응시대학수(13개대)와 응시인원(246명)이 집중되었음에 반하여 부산지역은 응시대학수(3개대)와 응시인원(23명)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비해 제2회 시험의 응시지구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응시자는 6개교 27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강원권은 경동대에 별도 시험장을 개설하여 동우대와 함께 96명이 응시하였으나, 관동대·여주대·인천전문대의 응시생이 없었다. 대구권의 응시자는 8개교 258명이었는데 경일대와 계명대, 대구미래대가 응시생이 없었다. 경북권의 응시자는 5개교 130명으로 대구권과 분산시켰다. 부산권은 타지역에 비하면 지원자가 적었으며 호남권만이 작년에 비해 응시인원이 줄었다.

2) 합격자 현황 및 분석

제1회 시험에서 수도권의 9개교 합격자는 163명이었고, 대구의 13개교 합격자는 228명이었다. 경북의 1개교 합격자는 71명이었으며, 부산의 3개교 합격자는 23명이었다. 대전의 7개교 합격자는 153명이었고, 광주의 7개교 합격자는 125명이었다. 수도권지역은 가장 많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합격률(88.1%)을 보였으며 부산지역은 응시대학수(3개대)와 응시인원(23명)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지만, 합격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합격률은 92%였으며, 지역별로는 부산권이 100%, 수도권이 88.15%를 차지하고 있다. 제2회 시험에서 수도권의 합격자는 330명이었고, 대구권의 8개교 합격자는 236명이었다. 경북권의 5개교 합격자는 121명이었으며, 부산권의 2개교 합격자는 27명이었다. 대전권의 5개교 합격자는 283명이었고, 호남권의 5개교 합격자는 93명이었다. 전체 합격률은 제1회 시험때보다 약간 낮아 회수를 더할수록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동시에 희소가치를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상 제기된 문제점

1) 자격시행기관의 정체성과 당위성

신변보호사 자격의 시행기관은 한국경비협회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상 설립된 법정단체로 경비업체라는 경비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단체이지 경호원·경비원의 단체가 아니므로 경비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전문가를 인정하는 시행기관으로서 부적당하며 경비원의 자격시행기관으로서 당위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경비협회가 경비업법상의 법정단체로 설립되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자격제도는 연구원과 교수가 만들고 경비협회의 이름만 빌려 자격을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연구원과 교수들은 권위와 공신력은 뒤로하고 경비협회가 명의만 빌려 로열티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권으로 비춰져 연구원과 교수들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경기업자의 사단법인체로서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장려할 사항이다. 이는 일본 경비업법상 전국경비업협회(http : //www.ajssa.or.jp)의 업무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자격부여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CPP자격을 주관하는 ASIS도 미국 시큐리티업체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어차피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점차 그 공신력도 갖게 될 것이다.

2) 기존 민간자격과의 차별화와 남발의 문제

신변보호사의 자격명칭과 등급, 검정체계에 대하여 다른 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사와 별반차이가 없으며, 이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경비업법상 국가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큐리티분야의 전문직으로서 위상이 아직 미비한데 하물며 민간자격의 경우는 더하리라 짐작된다.

경비지도사와 유사한 교과과목을 시험 보는 신변보호사의 제1회 자격시험 합격률은 92.8%가 된다고 해서 자격제도의 전문성이 없고, 실무를 중심으로 한 평가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검정도구가 결여되어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격과의 차별화문제는 「자격기본법」 및 「경비업법」 등에 저촉됨이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문제로 기득권 및 저작권을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시험 첫해의 합격률은 어느 자격시험에나 주어지는 일종의 홍보성 특혜이므로 제2회 시험의 합격율은 89.3%로 줄었으며 점차 적정한 합격율이 조정될 것이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취득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할 복안을 추진 중에 있다.

3) 홍보부족

제1회 신변보호사 시험은 민간경비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다고 한다. 많은 논문에서 경비와 관련하여 자격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글의 생명력은 일시적인 논문으로서의 가치밖에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간과한 듯하다. 즉 논문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화되고 제도화되어 시행됨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2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홍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만을 공고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각 대학에서의 학과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 대학의 교수와 어떤 협의나 협조요청도 없이 공고문과 원서만을 송부한 경비협회에 대하여 상대방이었던 각 대학의 교수와 학과조교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며, 역작용으로서 접수 자체에 대한 반감마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고문상에 있는 연구원으로의 교수, 학과조교,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음은 처음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보이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홍보면에서 적극적인 유형으로 인터넷이나 포스터·안내 전단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 시험응시 자격기준 및 검증방법상 문제

시행계획에 있어서 응시대상자의 폭에 대한 예측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지운, 2007a : 462). 응시자격에 대한 부분이 주로 시큐리티관련 학부학생 내지 졸업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직 교수나 대학원생의 경우나, 시큐리티업에 종사하거나 부전공을 하더라도 부사관학과나 유도·태권도학과 등의 전공자는 배제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향후에는 학력 등의 제한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큐리티경력자에 대한 검정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필기시험의 면제과목으로 규정된 경호학, 경찰학, 민간경비론, 범죄학, 경비업법, 법학개론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목만을 이수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검정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아울러 실기과목에 있어서의 무도종목의 선정에 있어서 특공무술과 기초체력에 대한 추가선정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제2회 시험 때는 표준무도를 개발해서 시험전에 사전 시연회를 개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이를 동영상 교재 등을 통해 보급하였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차회 면제혜택이나 실기시험에 있어서도 시큐리티실무에서 응용될 전문기술이나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구술형 면접도 평가기준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시큐리티자격제도의 발전방안

1. 전문성확보를 위한 여건조성과 공신력제고

전문성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의 첫번째 과제는 유능한 인재를 시큐리티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졸업과 취업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극심한 취업난에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 시큐리티산업과 관련된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산업의 영역확대를 위한 방향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은 대학생활에서 시큐리티산업의 중심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큐리티산업에 대한 자부심의 제시와 함께 타 직종에 비견할 수 있는 보수의 확보 등은 시큐리티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을 받은 자라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및 확인받아야한다.

수준 높은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큐리티자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기반여건 조성과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경비협회는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특히 시큐리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끊임없는 정책적 대안의 연구·개발, 대정부 건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경비의 인식전환, 홍보활동의 강화, 회원사관리 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여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정진환, 1995 : 64-65).

최근의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시큐리티관련 업무영역에 따른 질적 선진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서는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도입 또는 실시하는 자격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의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의 시큐리티제도에 관한 소개[11]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CPP나 일본의 경비원 검정제도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2회까지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평가하지만 이에 파생될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형태로 제도화 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면,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정착은 가능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은 단순한 시험의 시행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업무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 입장에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변보호사자격의 경우도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므로 시큐리티산업계와 사회의 통용성 등 자격의 공신력을 관리자 스스로가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검정단계에서 뿐만아니라 사후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해 시행이후부터는 점차 합격률도 조절하고 시큐리티 수요처에 맞게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자격인증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합격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 희소성을 고양시키며 전문성의 수준도 능력과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급수로 차별화하여 업무와 처우에서 처우를 달리하고 승급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다양한 시큐리티분야의 자격 개발과 취득·관리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의 수법을 능가하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11) 2006년 12월 8일 국립경찰대학에서 열린 한국경호경비학회 창립 10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시큐리티산업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대응) 및 2007년 8월 23일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이 한국경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시큐리티포럼(비교시큐리티제도)에서 발표한 일본, 중국, 독일 등의 시큐리티현황을 참고하기 바람.

인 공격적인 시큐리티자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다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적절한 시큐리티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영역별로 세분화된 적정 분야에 투입되어 전문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시큐리티관련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신변보호(경호)와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항공보안 외에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 다양화된 전문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변보호사외에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경비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방범설비사 등이다.

2006년의 제1회 시험은 신변보호사로 한정이 되었지만, 시큐리티와 관련된 영역은 ① 시설경비사(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② 호송경비사(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③ 기계경비사(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④ 특수경비사(항공기를 포함한 공항 등 시행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⑤ 대테러전문가(생물테러, 화학테러, 건물테러, 항공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테러의 유형별, 특성별 예방, 대응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 ⑥ 정보분석사(중요정보 및 첩보를 수집·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⑦ 시큐리티컨설턴트(시큐리티와 관련된 조언, 정보 및 제안을 행하는 업무를 수행), ⑧ 민간조사(사설탐정, 민사상의 증거자료 수집, 탐정의 업무 수행), ⑨ 산업보안전문가(기업기밀 누출방지, 위기관리, 기업손실예방 방법 및 업무수행) 등 다양한(박준석, 2006 : 200-5) 영역으로 종목을 확대시키고 업무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격증의 업무범위를 시큐리티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경호원 및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들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검정규칙[12]으로 정한 그 종별을 고려하여 신설할 수 있는 종목은 각 시설별(항공보안 등)경비, 상주경비, 교통유도경비, 귀중품 및 위험물 운반·호송경비, 특수경비, 기계경비, 방범설비사 등이다(안황권, 2006 : 178).

관련법령의 개정과 보완에 의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기본적인 경비원 자격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시큐리티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발과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 이수를 의무화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

12)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규칙(昭和61년 7월 1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5호)

록 하는 방안도 있다.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신변보호사자격도 갱신제도가 없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시큐리티산업의 특성상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안이라 볼 수 있고, CPP처럼 적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해 갱신제도를 두어야 한다. 응시자에 대한 학력제한은 철폐하여 비전공자에게도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합격 후 자격갱신제도를 활용하여 자질이 부족한 자는 그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및 경력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시큐리티자격 취득자 우대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받는 보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며 동시에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

보수는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충족에 관계된 것으로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유능한 인력을 채용·유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우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몇몇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 중에서도 경비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은 관리자인 경비협회가 법정단체로써 2천개가 넘는 회원사가 있어 민간경비 노동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층 신뢰성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시큐리티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는 ㉠시큐리티자격 중 취득자격증 외에 추가 취득할 경우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예 : 1차시험 면제),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도 검정기준, 과목, 응시자격, 경력 등이 자격제도의 기준에 상당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을 지급할 수 있다(경력자우대). ㉢시큐리티자격증 소지자가 석사나 박사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시큐리티관련 전공으로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산학협력), ㉣민간경비의 업무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격제도의 도입은 기존 시큐리티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처우의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3회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처우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비소지자와의 상대적 처우는 자격증취득을 위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시큐리티발전은 이를 선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자를 확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경비인력의 연령에 맞추어 실시하되, 가장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교육훈련과 연계 및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자격기본법(제9조)에서는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큐리티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술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관리자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검정방법에 있어서도 금번 시행한 신변보호사 시험과 같이 시큐리티자격을 급수에 따라 직접 검정하는 방법과 일본의 경비원검정제도와 같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검정 과목을 면제하는 간접검정방법을 도입하여 교육과 자격검정이 연계된 방법을 도입하고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교육적 낭비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신뢰할 수 있고 계속적인 자격교육훈련을 위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평생학습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전학습 및 현장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장된 능력이 자격취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한국의 경비지도사자격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신변보호사자격은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바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도 자격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하여 재평가후 자격갱신 및 경력관리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자격제도가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자격관리자의 하나인 경비협회는 시큐리티산업현장에서 인정받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으로 최대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처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시큐리티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취업 또는 승진시키고 수당지급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비업법령을 개정하여 자격소지자만 해당 경비업종에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큐리티지원연구원의 역점 연구사업을 발전시켜 전국시큐리티관련 학과

의 협의체가 형성하고, 이러한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더욱 내실화된 자격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자격검정 및 보수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비협회와 시큐리티관련학회의 연합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통 관심사를 연구·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연구원도 집중적인 검정 및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과 학생 그리고 단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공인에서부터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큐리티 주무부서와 유대가가 원활히 이루어져야한다.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으로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가 관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소방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전국경비협회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가 시행한 신변보호사제도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시스템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경비협회는 기본적인 권위와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들이 소정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민간경비제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주관에서 평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조직구성하여 인증된 교육기관 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도출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민간자격시행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당위성은 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으며, 시장경제의 논리하에 기시행되고 있는 다른 민간자격증과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아가 단계적으로 국가공인을 받고 산업계에 정착화되고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V. 결 론

시큐리티산업은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의 진압 외에도 사회안전의 확보라는 광범위한 시큐리티영역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큐리티요원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과거 비전문가에 의한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영역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새롭게 변질되는 범죄 및 안전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시큐리티관련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1·2회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및 정

착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시큐리티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산업계와 사회의 통용성 등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관리자 스스로가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비협회 등의 민간자격관리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이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문자격제도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

시큐리티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하므로 자격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시큐리티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격검정의 기준 및 관리가 교육훈련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검정·관리해야 한다. 시큐리티경력 및 현장성 있는 자격은 시큐리티요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적절한 보수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간경비 관련 시큐리티자격증은 대부분 신변보호(경호)와 민간조사와 관련되어 있다. 자격의 종류를 시설경비사, 신변보호사(경호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특수경비사 외에도 더욱 다양화된 시큐리티분야를 전문화하여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제2차에 걸쳐 시행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시큐리티산업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국가의 공인단계를 거쳐 더욱 다양한 시큐리티분야의 자격으로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종별에 따른 대우와 효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단체나 기관 및 구성원들의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아래 시큐리티자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직업능률에 대한 향상과 직업인 스스로 자주적 성장에 대한 동기유발의 효과 등을 갖게 하며, 직업인을 보는 사회적 인식변화는 바로 시큐리티관련 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시큐리티요원들은 상호연대감을 가지고 자율규제적인 조정능력을 갖게 되면서 비전문인데 대한 차별적 변화의 노력을 추구하게 되므로 시큐리티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관련 산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배완(2005).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제고”,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공배완 외 7인(2007).『비교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국제경호협회(2005).『경호자격규정집』.

김태환·박대우(2005).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안전학회.

박동균(2005).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_____(2002).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경호경비연구」제5호, p.135.

박준석(2006).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경호·경비·보안 관련분야의 학문적 영역 발전방향, 2006년 제4회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체육과학대학원 정기학술세미나 자료.

박준석·박대우(2004).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안성조(2006). “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및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경호경비연구」 제1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안황권·안성조(2006).『신경호경비업법론』, 서울 : 백산출판사.

이상원(2003).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호.

이창무(2006).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산업의 변화와 대응방안, 제4회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과 학술세미나 자료.

이윤근(1999).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행정논집」 제27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지운(2007a).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경호경비연구」 제1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_____(2007b). “시큐리티 산업관련 민간자격증의 발전방향”,「한국시큐리티 산학협력 진흥세미나」,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정진환(1995).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최선태(2000).「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최종태(2002).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제2호, 한국경찰학회.

片山賴康(2006). “일본 경비산업 현황 및 미래경비 발전방안-SECOM 그룹 전체 사업내용 중심으로-”, 시큐리티산업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경호경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자료.

(社)全國警備業協會(2007), *Security Time*, vol.336(2007. 4).

Cunningham, Willam C.,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Ⅱ*. Butterworth-Heinemann.

Johnson, Brian R.(2005), *Principles of Security Management*. NJ : Pearson Prentice Hall.

Simonsen, Clifford E.(2000),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 Prentice Hall.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 Plan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cern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Examination Qualified for Security Guard-

Lee, Sang-Chul · Ahn, Sung-Cho

Recentl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howing rapid growth compared with the different types of industry. However, it is not prepared the device for the system to verify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the security guards.

To protect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body and security guards have to be qualified professionally. For it the role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is emphasized. The problem of the cert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about the security guard to play the role to protect a body / life of the individual and property are the part to need necessarily as the quality problem of the individual and the trust of the people. The settl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such system can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with social trust. Th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is needed and how to control the security quality to get better service to the clients.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be carrying out with America and Japan is fix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business world and steady research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plan, these are giving the trial of the qualification system of a security of Korea full of the suggestion.

This study will do this to the basis which a necessity about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security man emphasis and consider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cerning the private security development plan around the Bodyguard Qualifying Examination which are carried out at twice by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Security.

In summary to meet the social dem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the security guards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es of civil security qualification systems.

Key Words : Security Industrial, Qualification System(Professional License), Bodyguard Qualifying Examination, Security Instructor, Security Guards